

1. 개정이유

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(법률 제19909호, 2024. 1. 2. 공포, 2025. 1. 3. 시행)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규정 신설(안 제10조)

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고, 안전성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7. 21. ~ 9. 1.)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수수료)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해야한다. 다만,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조(수수료)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해야한다. 다만,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 한 사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이 해양수산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.